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52호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1. 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이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 (1) 종전 생활체육에 관하여는 명시적 법률이 없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목적조항을 규정하였으나,
- (2) 「생활체육진흥법」의 시행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목적조항과 용어를 정의함.

(3) 「생활체육진흥법」에 자세히 규정된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대전광역시 시장의 책무조항을 삭제함.

나.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3조).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 목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되,

(2) 시행계획의 수립은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대전광역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생활화 운동 사업, 생활체육 대회 육성 사업,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에 관한 사업,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등에 관한 사업,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되,

(2)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일정 사업을 추진하는 생활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ykh50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체력 증진, 여간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 목표
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생활화 운동 사업
2. 생활체육 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사업
3.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에 관한 사업
4.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등에 관한 사업
5.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생활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